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03. 4. 20 개방된 청남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내륙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작년 12월 토지를 매입한데 이어 본관을 비롯한 건물과 공작물 등 잔여재산 전수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며
-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 계획을 2003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어 기본설계 실시 결과, 분향실 등 시설 확충과 건축비의 증액 사유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 ▶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40-1외 일원
- 재산규모
 - 건 물 : 본관외 45동 11,163.15㎡
 - 공작물 : 테니스장외 22건
 - 입목죽 : 느티나무외 40종 5,209주
 - 선 박 : 2척 10톤
- 재산가액 : 9,504백만원(대장가격)
- 사업기간 : 2004. 3~4
- 사 업 비 : 비예산(무상양수)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청주의료원내)
- 사업규모
 - 장례식장 : 연건평 3,729.54㎡(지하 2층, 지상 2층)
 - 부지매입 : 3필지 1,005㎡
- 사업기간 : 2003. 5~2005. 5(3년간)
- 사 업 비 : 7,400백만원(특별교부세 2,250 도비 2,850, 의료원 2,300)

※ 주요변경내역

- 신축규모 : 3,140㎡ ⇒ 3,729.54㎡(589.54㎡ 증가)
- 사 업 비 : 4,900백만원 ⇒ 7,400백만원(25억 증액)
 - 특별교부세 : ⇒ 2,250백만원(신규)
 - 도 비 : 2,650백만원 ⇒ 2,850백만원(2억 증액)
 - 청주의료원 : 2,250백만원 ⇒ 2,300백만원(5천만원 증액)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자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계	7,400,000 (도비 2,850,000)				
청남대(국유)재산 건물등 3종 무상양수	-				비 예 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건립 및 편입부지 매입	6,800,000 (도비 2,250,000) 600,000 (도비 600,000)				건 물 진입로 부지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	290,370.20㎡ (87,836평)	26,676,000	1	1,005.00㎡ (304평)	600,000	3	291,375.20㎡ (88,140평)	27,276,000
		건물	3	9,240.00㎡ (2,795평)	10,467,800	2	14,892.69㎡ (4,505평)	13,744,226	5	24,069.69㎡ (7,281평)	24,212,026
		기타				1	3종	2,560,429	1	3종	2,560,429
	매입	토지	2	290,370.20㎡ (87,836평)	26,676,000	1	1,005.00㎡ (304평)	600,000	3	291,375.20㎡ (88,140평)	27,276,000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3	9,240.0㎡ (2,795평)	10,467,800	2	14,892.69㎡ (4,505평)	13,744,226	5	24,069.69㎡ (7,281평)	24,212,026	
	기타				1	3종	2,560,429	1	3종	2,560,429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기타 : 3종 - 공작물(테니스장의 22건), 입목축(산:타나무의 40종 5,209주), 선박(2척, 10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005.00㎡ (304평)	600,000 600,000)				
	건물	2 건	14,892.69㎡ (4,505평)	13,744,226				
	기타	1 건	3 종	2,560,429				
1	토지							
	건물	청원 문의 신대 산 40-1외 일원	11,163.15㎡ (3,376평)	6,944,226	2004. 4	청남대의 효율적 개발·관리	국 가	무상양수
	기타	"	3 종	2,560,429	2004. 4	"	"	"
2	토지	청주 흥덕 사적1동 736외 2필지	1,005.00㎡ (304평)	600,000 600,000)	2004	청주의료원 장례 식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		
	건물	청주 흥덕 사적1동 554-6 (청주의료원 내)	3,729.54㎡ (1,128평)	6,800,000 (2,250,000)	2004 ~ 2005	청주의료원 장례 식장 운영·관리	신 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 기 타 : 3종**

- 공작물 : 테니스장외 22건 718백만원
- 임목축 : 느티나무외 40종 5,209주 1,762백만원
- 선 박 : 2척 10톤 81백만원

관계법령발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